

【 2 】 양주 마전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표명의 건

발의년월일 : 2004. 7. 13

제 의 자 : 김완수의원외 2인

□ 제안이유

- 양주시 마전동 일원 426천평에 대해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코자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외의 의견을 밝히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첨

양주시 마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마전동 일원 426천평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1) 개발제한 구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마전동 일원에 택지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을 건설한다면 당초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과는 전혀 배치되는 사항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아울러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가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개발 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 2) 또한 개발제한 구역의 규제로부터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시점인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공탐공고가 진행되는 시점에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택지개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당연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우선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한다는 빌미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고통받던 원주민의 이주는 부당하며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을 강행한다면 원주민이 거주하는 집단 지역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아울러 택지개발 계획은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행정타운계획과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현재 우리시에 건설중인 민간주택 미분양 사태와 고을 택지개발 사업등 양주시와 인근시군의 전반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입대 주택 입주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양주시의 행·재정적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7월 19일

양 주 시 의 회